심사보고서
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29호
심사일자	2026. 10. 15.

위원장 전 정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
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(우편번호 05584) / Tel : (02)2147-3600 / Fax : (02)2147-3956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9

2026년 10월 15일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10. 2. 송파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7.

다. 상정일자: 2026. 10. 15. 제33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엄귀대 도시안전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내용 시행(2026. 7. 22.)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를 확립하고, 기존 조문 내용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「공연법」 상 신고 대상인 공연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1상 심의 대상인 축제와 혼동될 수 있어 일부 호 수정 (안 제14조제2항제3호)

○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중 통일되지 않은 명칭 수정 (안 제19조제2항, 안제20조)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의2 및 제15조 개정에 따른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1조의2)

○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중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·소통에 관한 사항 반영(안 제27조제1항제2호의2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(1)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의2, 제15조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관련부서 사전협의: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,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보육과), 규제사전심사(기획예산과)

○ 기 타

(1) 개정문안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, 관계법규 : 별첨

(2) 입법예고: 2026. 9. 9.~ 9. 29. (20일간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손지훈)

○ **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은 2026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, 의안번호 제29호로 접수,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○ **본 일부개정조례안**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에 피해자 지원 및 소통 기능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

하고 있음. 또한,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**주요 내용**

- **안 제14조제2항제3호**의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협의·조정을 규정하면서, 「공연법」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,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공연 관련 재해대처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**안 제19조** 및 **제20조**는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에 관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에서 “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”고 명시하고 있는데,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에서 구성원 중 “총괄조정관”을 “지원협력관”으로 오기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내용임.
- **안 제21조의2**는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송파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27조**는 통합지원본부의 업무에 ‘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’을 추가하려는 것임.

- 본 **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개정으로 중앙 차원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 취지를 송파구의 재난대응체계에 반영하여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,

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「공연법」상 재해대처계획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,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으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·제출된 안건임을 **검토 보고**드림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: **질의없음**

5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